

일자: 2018년 11월 5일

수신자: Marilyn Elliot, 부국장
ADEM 차별 금지 조정관

발신자: Lance R. LeFleur, 국장

주제: 차별 금지 고발 조사 절차

차별 금지 조정관은 다음과 같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장애, 나이, 성별, 또는 40 C.F.R. 제5부 및 제7부(아래 (10)항 참조)에 의해 보호받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보복이나 위협에 근거하여 앨라배마 환경 관리국(ADEM)이 차별 대우를 주장하는 불만을 처리합니다.

(1) ADEM이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은 몽고메리에 있는 ADEM의 차별 금지 조정관에게 전달됩니다.

(2) 불만제기자가 서면 진술서를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상황이 아닌 경우, 차별에 관한 구두로 된 불만 사항이 전화 (334) 271-7710번을 사용해서 차별 금지 조정관에게 전달됩니다. 불만제기자는 필요할 경우, 구두 불만사항을 서면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ADEM 직원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3) ADEM이 차별을 추정하는 모든 불만사항은 다음 정보에 대해 검토를 받습니다.

- a. 40 C.F.R. 제5부 및 제7부를 위반하는 차별을 했거나 결과적으로 차별이 된 것으로 ADEM이 추정하는 특정 행위(들)
- b. 그러한 행위(들)의 결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한 영향,
- c. 추정되는 차별 행위의 적용을 받고, 영향을 받거나 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들의 신원.

(4) 불만 접수일로부터 10근무일 내에, ADEM은 불만제기자나 그의 대리인에게 서면 접수 확인서와 불만사항 수사 방법에 대한 통보서를 제공합니다. ADEM은 또한 불만제기자에게 40 C.F.R. 제5부 및 제7부에 따라 불만 사항이 U.S. EPA, External Civil Rights Compliance

Office(주소: 1200 Pennsylvania Avenue, N.W., Mail Code 1201A, Washington, DC 20460-1000)로 신고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5) 차별 금지 조정관은 차별 혐의가 있는 문제가 40 C.F.R. 제5부 및 제7부의 적용 범위에 있는지 그리고 불만 사항이 수사를 보장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불만 제기를 ADEM이 접수한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불만제기는 수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a. 표면상 미미하거나 사소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
- b. 관할권 및 조사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할당 된 시간 내에 ADEM은 자발적으로 비준수를 인정하고 적절한 교정 조치를 취하거나 불만제기자와 비공식적인 해결책을 취할 것에 동의한 경우, 또는
- c. 관할권 및 조사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할당된 시간 내에 불만제기자가 불만제기를 철회한 경우.

(6) 차별 금지 조정관이 불만제기를 인정할 경우, 조정관은 차별 금지 주장 내용(들)을 조사할 개인을 지정합니다. 40 C.F.R. 제5부 및 제7부 요건의 관점에서 조사한 다음 수사관은 발견 사항과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7) 불만제기자가 관할권 및 조사의 가치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ADEM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ADEM이 불만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불만제기자는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8) 하위 수신인, 허가 신청자 및 피허가자와 같은 제삼자가 포함된 불만제기의 경우, ADEM은 불만제기자에게 불만제기를 접수했다는 서면 통보를 한 시간보다 늦지 않게 제삼자에게 불만제기를 접수했음을 통보합니다. 그 시점에, ADEM은 제삼자에게 ADEM이 불만 사항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ADEM은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데 제삼자와 불만제기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합니다.

(9)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국장 사무실(Office of the Director)은 증거의 우세를 근거로 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확인 사항과 권고 사항을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하여 그것을 서면으로 불만제기자에서 회신합니다. ADEM은 국장 사무실이 승인한 권고사항을 이행합니다.

(10) ADEM 직원은 40 C.F.R. 제5부 및 제7부에 따라 허용되는 어떠한 권리나 권한을 방해할 목적으로 또는 개인이 40 C.F.R. 제5부 및 제7부하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반대했거나 불만을 제기했거나, 수사에 관해 증언, 지원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보복, 협박, 위협, 강압 또는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책임의 ADEM 차별금지 조정관으로의 위임에 의해 그리고 위임을 통해, 40 C.F.R. 제5부 및 제7부하에서 적용되는 기타 연방 인권 법률 및 표제 6(Title VI)하의 불법적 차별행위를 주장하는 불만제기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위의 절차들이 이에 채택되었습니다.

Lance R. LeFleur, 국장

